## 2015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운용계획안

#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 165 2014년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

## Ⅰ. 심사경과

1. 제출일자 : 2014. 10. 31.

2. 제 안 자 : 서울특별시교육감

3. 회부일자 : 2014. 12. 8.

4. 상 정: 서울특별시의회 제257회 정례회

- 1)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(2014.12.10.)
  - 안건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
- 2)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(2014.12.11.)
  - 감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·답변 종결
- 3)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(2014.12.16.)
  - 원안 가결

## Ⅱ. 제안설명 요지(기획조정실장 김재금)

- 제안 이유
  -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사고로
     생명·신체에 입은 피해 지원을 위해 설치한
    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의 건전성을 강화하고자
     2015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
- 2015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의 기본방향 첫째, 학생, 교직원, 교육활동 참여자의 보호기능을 강화하고 둘째,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·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· 교직원·교육활동 참여자에 대한 공제급여를 지급하고 셋째,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비를 지급하고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임

#### O 수입과 지출계획

수입계획은 총 153억 3천 2백만원으로
공제료수입 54억 3백만원
이자수입 2억 3천 9백만원,
교육금고 약정에 따른 지원금 6천만원,
수익사업 전입금 1억 2천만원,
학교폭력피해지원 이월금 16억 1천 5백만원,
전년도 공제사업 이월금 78억 9천 3백만원임

- 지출계획은 총 153억 3천 2백만원으로 공제급여지급 78억 5천 5백만원,
  예방홍보사업 9천 9백만원,
  학교폭력피해지원 16억 1천 5백만원,
  인건비 7억 6천 6백만원,
  업무추진비 3천만원,
  일반운영비 3억 6천 1백만원,
  2015년도 이월금 46억 3백만원임
-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학교안전공제 사업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공제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을 설치하고 있으며, 기금은 공제급여의 지급, 공제회의 재정지원, 학교안전공제제도의 조사·연구·홍보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·교육지원 사업, 학교폭력피해학생 치료비 등과 관련한 경비에 사용하고 있음
-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
  - 2006년 말 150억 9천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으며,
     2015년에는 출연금, 보조금 등 74억 4천만원을 조성하여,
     학교폭력 지원비 16억 1천 6백만원,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
     107억 2천 9백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,

최종기금 조성액은 32억 8천 9백만원 감소한 46억 4백만원임

## Ⅲ.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엄지운)

## □ 2015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

 ○ 2015년도말 동기금의 조성액은 46억 400만원이며 2015년도의 수입과 지출을 가감하여 2014년도 말 조성 현재액(95억 900만원)
 보다 △51.6%. △49억 500만원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됨

#### 〈표 4-2〉 2015년도 기금조성규모

(단위:백만원)

	기		ᆔ		2014년도말 조성현재액	2015	년도	2015년도말	スカ	スカモ
		금	명			수입	지출	조성현재액	증 감	증감률
학교	교안전공기	제 및 /	사고예병	기금	9,509	5,824	10,729	4,604	△4,905	△51.6
	구	제	기	급	7,893	5,824	9,113	4,604	△3,289	△41.7
	폭			럭	1,616	0	1,616	0	△1,616	△100

○ 동 기금은 「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」제 12조1)에 의거 의무적으로 학교장은 학교안전공제의 가입자가 되어 공제 료를 납부하는 기금으로써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1. "학교"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.
- 가.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(이하 "유치원"이라 한다)
- 나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의 규정에 따른 학교(이하 "초·중등학교"라 한다)
- 다. 「평생교육법」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(이하 "평생교육시설"이라 한다)
- 라. 「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

<sup>1) 「</sup>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」

제12조(학교안전공제의 가입자)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학교장은 학교안전공제의 가입자가 된다. 다만, 「초중등교육법」 제60조의2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학교의 학교장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의 승인을 얻어 학교안전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.

○ 이는 수입계획은 금년도(55억 7,500만원)보다 33.5%(18억 6,500만원) 증가하였으나, 수입대비 지출계획이 32억 8,900만원 초과할 것으로 계획되는 바, 기금 수입 감소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대안이 개발될 필요가 높은 것으로 판단됨

〈표 4-3〉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

(단위:백만원)

			조 성	성 액			잔액				
연도별	계 a	출연금	보조금	공제료 수입	이자 수입	기타 수입	계 (b)	공제 급여	학교폭력 지원비	인력 운영비 및 기본경비	(a)-(b)
2015	7,440	60	1,616	5,404	240	120	10,729	7,690	1,616	1,423	△3,289
2014	5,575	60		4,824	571	120	10,133	6,963	1,616	1,554	△4,558
2013	4,859	60		3,896	731	172	7,512	6,104	70	1,338	△2,653

○ 다만, 기금감소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제료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나, 교육부에서 매 사업연도마다 전전년도 이전 최근 3년간의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추이와 공제급여 지급 실적, 전전년도의 공제 사업 및 예방 사업 등의 운영경비와 물가 상승률 등을반영하여 공제료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공제회에서는 이자수입과 기타수입의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등의 기금 운용의 안정성을 높여야할 것으로 판단됨

## Ⅳ. 심사결과

## 1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 략

## 2. 조정소위원회 심사경과

#### 1) 소위원회 구성

O 일 자 : 2014. 12. 11.(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)

O 장 소 :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(의회별관 2층)

O 위원구성: 예결위원 13명

- 위 원 장 : 김제리(환경수자원)

- 부위원장 : 김정태(도시계획관리), 이복근(보건복지)

- 위 원 : 이현찬(행정자치), 박양숙(기획경제),

이정훈(환경수자원), 김창원(문화체육관광),

김선갑(보건복지), 김동율(도시안전건설),

김상훈(교통), 강성언(교육)

박마루(보건복지), 이혜경(문화체육관광)

#### 2) 소위원회 예산안 심사

#### ○ 제1차 소위원회

- 일 시 : 12. 13.(토) 10:00 ~ 12. 13.(토) 12:00

- 장 소 : 후생동 4층

- 참 석 : 예결위원

- 내 용 : 사업별 계수조정 심의

## ○ 제4차 소위원회

- 일 시 : 12. 16.(화) 15:00 ~ 12. 16.(화) 18:30

- 장 소 : 후생동 4층

- 참 석 : 예결위원

- 내 용 : 사업별 계수조정 심의

# 3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# 2015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

의안 번호 165

제출년월일 : 2014년 10월 31일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교육감

#### 1. 제안이유

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사고로 인해 생명·신체에 입은 피해 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의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「2015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」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위한 것임.

#### 2. 주요내용

#### 가.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의 기본방향

- 학생,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의 보호기능을 강화하고,
-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·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,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공제급여를 지급하며
- 학교폭력피해학생의 치료비를 지급하고 가해자로부터 구상권을 행사.

#### 나. 2015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영계획

- 수입계획은 15,332,656천원으로
  - 공제료수입 5,403,727천원과
  - 이자수입 239,755천원
  - 교육금고약정에 따른 지원금 60,000천원
  - 수익사업 전입금 120,000천원
  - 학교폭력피해지원 이월금 1,615,963천원
  - 전년도 공제사업 이월금 7,893,211천원임
- 지출계획은 15,332,656천원으로
  - 공제급여지급 7,855,600천원과
  - 예방홍보사업 99,100천원
  - 학교폭력피해지원 1,615,963천원
  - 인건비 766,901천원
  - 업무추진비 30,000천원
  - 일반운영비 361,477천원
  - 2015년도 이월금 4,603,615천원임

#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 ~ 제54조

## 나.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															·= ··	7 4 4 7
	조 성 액									집 행 액						
연도별	계 ②	출연금	보조금	공 제 료 수 입	융자금 회수 (이자 포함)	예수금	이자 수입	기타 수입	계 ⑤	공제 급여	학교폭 력 지원비	인력 운영비 및 기본 경비	차입금 원리금 상환	예수금 원리금 상환	기타 지출	잔액 (a)-(b)
~2006년 까지	44,468	9,307		23,014			12,147		29,378	25,495		3,883				15,090
2007	2,990	42		2,220			728		3,765	3,180		585				-775
2008	2,988	30		2,191			647	120	3,149	2,511		638				-161
2009	3,947	30		3,201			596	120	3,496	2,809		687				451
2010	4,402	30		3,652			600	120	3,905	3,132		773				497
2011	4,245	30		3,518			577	120	4,709	3,795		914				-464
2012	6,145	30	1,668	3,710			617	120	5,679	4,441	71	1,167				466
2013	4,859	60		3,896			731	172	7,512	6,104	. 70	1,338				-2,653
2014	5,575	60		4,824			571	120	10,133	6,963	1,616	1,554				-4,558
2015	7,440	60	1,616	5,404			240	120	10,729	7,690	1,616	1,423				-3,289
계	87,059	9,679	3,284	55,630			17,454	1,012	82,455	66,120	3,373	12,962				4,604

<sup>\* 2014, 2015</sup>년 예산액 기준